

[서식 예] 장해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

소 장

- 원 고 O O (주민등록번호) OO시 OO구 OO길 OO (우편번호 OOO-OOO)
- 피 고 국민연금관리공단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 대표자 이사장 △△△

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가 20○○. ○. ○.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사건의 개요
- 가. 원고는 19○○. ○. ○. 최초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오던 중 19○○. ○. ○. 처음으로 '후두암' 진단을 받은 다음 20○○. ○. ○. 후두암 수술을 받았습니다.



- 나. 위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언어장애와 호흡기장애가 발생하였는데, 그 중 '언어장애'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2급을, 소외 부산 ○○구청으로부터 3급을 각 인정받았습니다[갑 제1호증 심사청구 결정통지 (첨부된 결정서 2면 중 4의가. 참조), 갑 제2호증 복지카드].
- 다. 원고는 당시 폐와 가까운 곳에 구멍이 있어서 산소호흡기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여서 약간의 활동이나 이동은 가능하나 조금만 무리하면 숨쉬기가 어려운 증상이 생겨 일상생활에 있어서 불편함은 물론이고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, 위 수술을 받은 후 생활하던 중 목에서 피를 토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은 결과 호흡기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(이하'이 사건 상병'이라고만 합니다)을 받고 치료를 받아 왔습니다.
- 라. 이에 원고는 ○○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, 담당의는 '기관지확장증, 폐결절우하엽, 후두암 수술후 기관절개'로 인하여 1초간 강제호기량이 9%에 불과하다는 소견 및 이로 인하여 운동 및 보행시 심한 호흡곤란이 생긴다는 원고에 대한 문진을 종합하여 '일상생활 활동능력 및 노동능력이 없'다는 판단아래 '호흡기 장애 1등급'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(갑 제3호증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).
- 마. 이를 근거로 원고는 20〇〇. 〇. 〇. 피고 〇〇지사에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, 동 지사는 20〇〇. 〇. 〇. 원고의 상태가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(이하'이 사건 처분'이라고만 합니다)을 통지하였고, 원고는 그 즈음에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(갑 제1호증 중 결정문 1의 가,나항 참조).

2. 피고 처분의 위법성

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국민연금가입 중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 및 정확한 초진인 등이 확정되지 않았고, 장애등급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, 피고의 동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.

가. 장애발생시점 등에 관하여

1) 피고는 이 사건 처분 결정서에서 이 사건 상이가 국민연급 가입 중 발생한 것인지, 정확한 초진일을 사실상 확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, 장애등급에 해당하



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자료보완을 하지 않고 장애연급 수급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

2) 그러나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음이 '명백하지 않음'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고, 그에 앞서 이 사건 상이가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보면 이 사건 상이는 20○○. ○. 처음으로 후두암으로 진단을 받아 같은해 ○. ○. 관련 수술을 받은 다음 -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- 그로 인하여 생긴 질환으로 봄이 타당한데,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고는 이미후두암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'언어장애'에 관하여 2급을 인정한 상태이므로, 연금가입기간 중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언어장애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것입니다.

또한 원고의 경우에는 수술을 한 날이 아니라 초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(그렇지 않을 경우 초진일과 수술일의 시간적 차이로 인하여 연금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) 원고는 19〇〇. 〇. ○. 최초 가입한 이래 20〇〇. ○. ○.부터 20〇〇. ○. ○.까지 가입을 한 상태였고, 위기간 중인 20〇〇. ○. ○.에 초진을 받아 후두암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가입 중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(갑 제4호증 가입내역 확인).

나. 장애등급 해당여부에 관하여

1) ○○대학교병원의 진단

원고는 ○○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20○○. ○. ○. 검사를 받은 결과, ①1초시 강제호기량이 0.28(9%)로 측정되었고, ②원고는 평소 운동 및 보행시 심한 호흡곤란을 겪어왔던 점을 고려하여 호흡기 장애 1등급 진단을 받았습니다.

2) 관련 규정

그런데 ①국민연금법 시행령 [별표 2]는 "6. 위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 불능상태이며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"를 1급으로, 그 이하의 장애를 2급 내지 4급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, ②'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'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30호)은 보다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바, 호흡기장애에 관하여 "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간의 안정과 상시 보호또는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- 폐기능이나 동맥혈산소분압이



고도이상으로 안정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자"를 1급으로, 그 이하는 그 상태에 따라 2~4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3) 판단 방법

위 장애심사규정은 '노동불능상태 내지 신체의 기능'을 일응의 기준으로 하면서도, 이에 덧붙여 '폐기능이나 동맥혈산소분압'을 객관적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① '폐기능'의 인정요령은 1초시 강제호기량, 폐확산능, 강제폐활량 등의 측정치를 말하고, ② '동맥혈산소분압(PO2)'은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실시한 동맥혈 가스분석의 측정치를 말합니다(장애심사규정 제6절 호흡기의 장애. 2. 인정요령. 나. 폐기능의 검사참조).

그런데 위 장애심사규정은 '2. 인정요령'에서 '호흡기의 장애는 호흡곤란정도, 흉부 X-선 촬영, 폐기능검사, 동맥혈가스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소견에 의하여 판정'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, 위 장애심사규정은 폐기능과 동맥혈산소분압을 동등한 판단방법으로 규정하고 있고, 무엇보다도 1초시 강제호기량 역시 '객관적인 검사소견'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위 규정은 이에 덧붙여 호흡기 장애 판단기준으로 '호흡곤란정도'라는 당사자의 상태 역시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.

그러므로 피고의 주장, 즉 '동맥혈산소분압이 객관적인 증거이고, 1초시 강제호기량은 수검자의 상태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므로 객관적인 증거라고 볼 수 없다'는 취지의 주장은 명백히 위 규정에 배치되는 것입니다. 피고는 여러 가지판단 요소 중 원고에게 유리한 여러 가지 요소(1초시 강제호기량, 호흡곤란정도)를 배제하고, 의도적으로 불리한 요소만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입니다. 오히려 원고를 진단한 ○○대학교병원 전문의는 1초시 강제호기량 및원고의 호흡곤란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고가 1급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내린 것이므로 위 규정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.

원고의 장애유무 및 등급은 추후 신체감정을 통하여 입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

3. 결론



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,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, 이러한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심사청구 결정통지

1. 갑 제2호증 복지카드

1. 갑 제3호증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

1. 갑 제4호증 가입내역 확인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2통

1.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 1통

1.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

1. 납부서 1통

1. 소장부본 1통

2000. 0. 0.

원 고 ㅇ ㅇ ㅇ (인)

○○행정법원 귀중

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소기간	※ 아래(2) 참조
청 구 인	피처분자	피청구인	행정처분을 한 행정청
제출부수	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 큼의 부본 제출	관련법규	행정소송법 9 ~ 34조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□만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□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불복방법 및 기 간			

※ (1) 관할법원(행정소송법 9조)

- 1.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. 다만, 중앙행정기관,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과 국 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2.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.

※ (2) 제소기간(행정소송법 20조)

- 1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. 다만,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.
- 2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(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.